

교권학립의 길잡이

알아두면 힘이 되는
교권상식

알아두면 힘이 되는 -
교권상식



 www.kfta.or.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www.kfta.or.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확립의 길잡이

알아두면 힘이되는 -

교권상식



www.kfta.or.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 ■ ■ ■

“한국교총은 선생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군 현 || 한국교총 회장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항상 애쓰시며,
교육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국의 선생님
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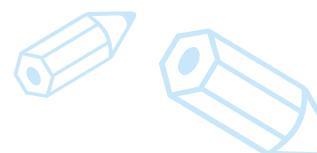
날로 다양화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
들이 각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요즘 교
원의 권리의식과 교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교단갈등
과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 등의
교권 사건은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아픔과 상처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존
심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학교공동체 구
성원들간의 갈등은 교육을 위기로까지 내
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교
육의 위기 상황 하에서도 정부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원 스스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권 사건이 발생하
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
내하는 자료가 많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증가하
는 잡무 속에서 교원 스스로의 힘으로 해
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이

러한 과정에서 교권침해의 악순환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선생님들의 교권의식
을 높이고,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
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자
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교권과 교
육권의 개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적 장치, 공무상 재해와 보상, 휴직제도,
학교안전사고와 교원의 법적책임 범위,
체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각종 권리구
제 제도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하여 학
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면
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
께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정리·편집 하
여 하나의 책자로 만든 교권부서 직원들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
교권상식

교권학습의 길잡이

Contents

I. 교원과 교권

- | | |
|---------------------------------------|----|
| 1. 교원의 권리는 어떤게 있나? | 6 |
| 2. 교원의 교권과 교육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 8 |
| 3. 교원의 예우 향상을 위한 법적 장치는 어떤게 있나? |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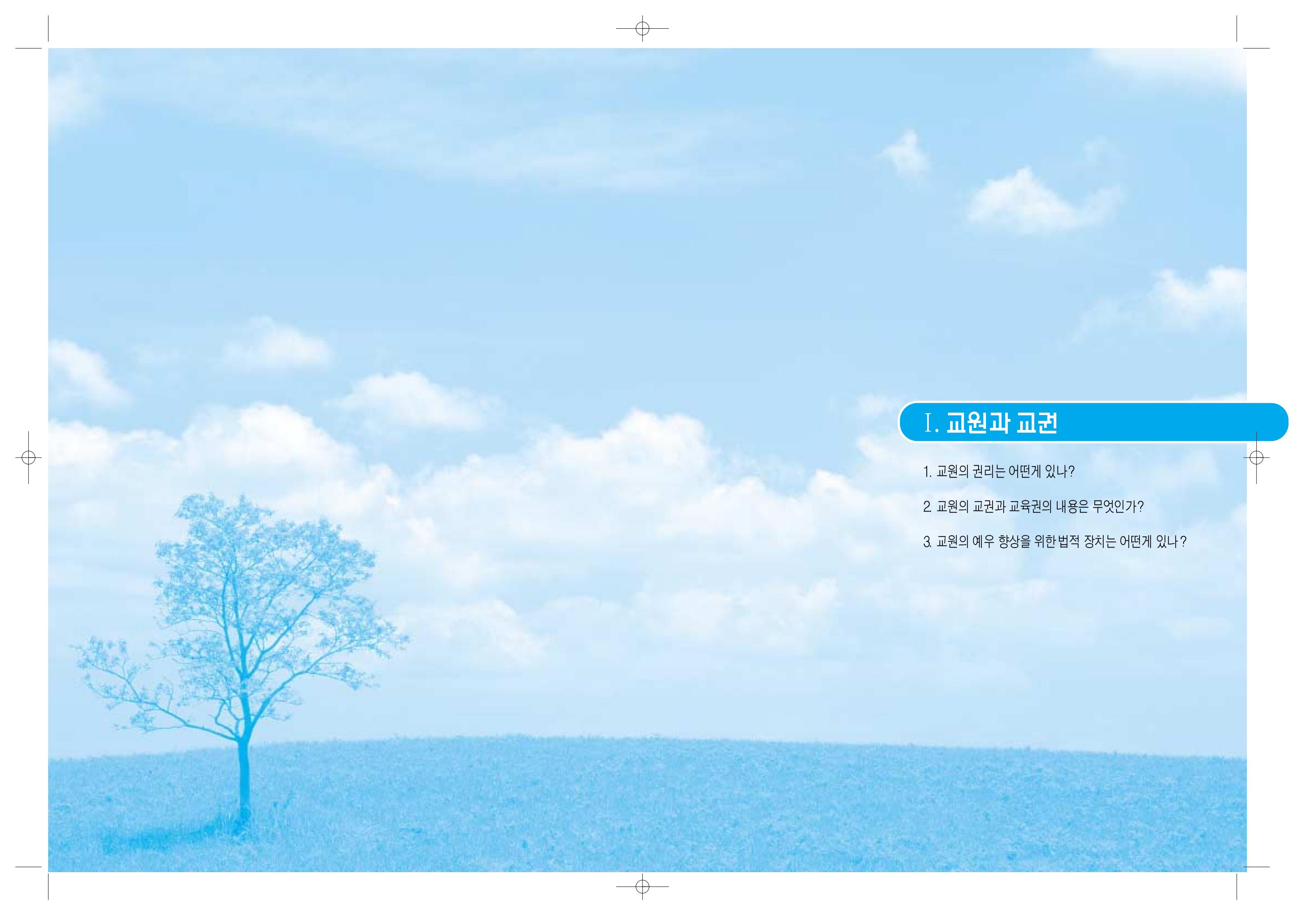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 | | |
|----------------------------------|----|
| 4.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하여 | 16 |
| 5. 교원의 공무상 재해와 보상에 대하여 | 23 |
| 6. 교원의 휴직제도에 대하여 | 28 |
| 7. 학교안전사고와 학교·교원의 법적책임 범위 | 31 |
| 8. 체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 37 |

III. 이럴땐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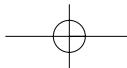
- | | |
|--|----|
| 9. 교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교원징계재심제도 | 40 |
| 10. 교직생활중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고충처리제도 | 46 |
| 11.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제도 | 50 |
| 12. 학교에서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제도 | 53 |
| 13. 쉽게 풀어본 형사·민사소송제도 | 55 |
| 14. 생활법률 무료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안내 | 58 |
| 15.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 | 60 |

한국교총의 교권옹호제도 안내



I. 교원과 교권

1. 교원의 권리와 책임은 어떤 것인가?
2. 교원의 교권과 교육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3. 교원의 예우 향상을 위한 법적 장치는 어떤 것인가?



I. 교원과 교권



① 교원의 권리는 어떻게 있나?

교원의 권리

교원이 전문직으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

교원의 권리 · 의무

| 구 분 | 내 용 |
|-----------|---|
| 1. 교원의 권리 | 1.1 교육할 권리 ①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 국가의 권한 ② 교재의 선택 · 결정권 : 검 · 인정 교과용 도서 사용 ③ 교육내용 및 방법결정권 : 초 · 중등학교 소극적 보장 ④ 성적의 평가권 : 객관적 · 종립적 기준에 의해 실시 ⑤ 학생지도 및 징계권* |
| | 1.2 신분상의 권리 ① 신분 및 직위보유권* ② 직무집행권* ③ 재심청구 및 행정쟁송권 : 교원징계재심제도 ④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 ⑤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⑥ 불체포특권* ⑦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권 및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⑧ 여교원의 동등신분 보장권* ⑨ 교원의 단체 결성과 교섭협의권 및 노동조합 결성권 –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 운영권 ⑩ 교원의 정치활동 : 대학교수 예외적 허용 |
| | 1.3 재산상의 권리 ① 보수청구권 ② 연금청구권 ③ 실비변상청구권 : 직무수행상 소요되는 비용 |
| 2. 교원의 의무 | 2.1 성실의무 부여된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의무 |
| | 2.2 직무상의 의무 ① 법령준수의무 ② 복종의무 ③ 직무전념의무 – 직장이탈금지 의무 – 영리 및 겹직금지 의무 ④ 친절 · 공정의무 |
| | 2.3 신분상의 의무 ① 비밀엄수의무 ② 청렴의무 ③ 품위유지의무 ④ 영예 등의 제한 ⑤ 정치활동 금지 의무 ⑥ 집단행위 금지 의무 |

* 표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참조

● 학생지도 및 징계권

학생에 대한 징계는 꾸짖거나 단체 기합, 체벌과 같은 사실행위로서 행해지는 것과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과 같은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형태로 구분되어 진다.

● 신분 및 직위 보유권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과 직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제되거나 그 직위에 속하는 직무의 집행을 방해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 즉,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한 휴직, 해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직무집행권

교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집행을 방해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방해할 때에는 ‘공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교원의 직무는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 · 지도하는 것이다.

●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

공공 봉사자로서의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 조치(휴직 · 강입 · 면직)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권고사직 당하지 아니할 권리

‘교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는 정신에 입각하여 권고사직 당하지 아니할 신분상의 권리를 가진다.

●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할 특권’을 가진다. 이의 법익은 교원의 신분상의 보장 뿐만 아니라 ‘교원의 자율성’과 ‘학원의 불가침’을 보호하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권 및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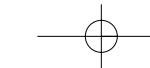
교원이 징계처분을 당할 때는 그 처분권자 혹은 처분제청권자로부터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원이 그 처분에 불만하여 징계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이 제도는 임용권자의 판단착오로 인한 부당한 직권면직 조치에 대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여교원의 동등신분보장권

여자와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헌법(제32조)이 규정하고 있다. 여교원은 출산휴가에 대해서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산모의 건강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3년간의 휴직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관련 법령

헌법,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I. 교원과 교권



② 교원의 교권과 교육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교권의 개념

-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 또는 권위를 줄인 말이라 할 수 있다. 교원의 교육권을 줄인 말로 이해하면 학생을 교육할 권리로서 법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되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교원의 권위를 줄인 말로 이해하면 스승으로서의 지위에 기초한 윤리적 의미와 전문성에 기초한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의미가되어 이를 침해하게 되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이와 같이 교권은 학생을 교육할 법적인 권리와 스승 또는 전문직으로서 윤리적·사회적 의미에 따른 전문적·기술적 권위의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권은 학생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힘(권리)과 사회적·윤리적으로 교사의 지위와 능력에 따라 부여된 권리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교권의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교원의 권리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으로 스승 또는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권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여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할 권리(교육권)로서의 교권

교원의 교육할 권리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교원의 교육할 권리는 자연법상으로는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한 것이다. 이러한 교원의 권리는 자격증제도나 채용 등으로 인정되고 있는 교원의 법적 지위에서 성립하는 기능이다.
- 교육권의 구체적 내용은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의 채택·선정권, 교육방법의 결정권, 교육결과의 평가권, 학생지도권 등이다.
- 교育권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법에서는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교원의 전문성 존중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 및 신분 보장을, 제2항에서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3항에서는 학생에 대한 정치적 지도·선동 금지

를, 제4항에서는 교원의 공직 취임권을, 제5항에서는 교원 인사에 대한 법률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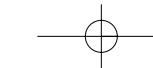
교원의 교육권의 범위와 한계

- 공교육체제 하에서 교원 개인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 노동활동 등이 학교교육의 장에서 제한 받는 것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육 내용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종교적 중립과 정치적 중립이 학생의 올바른 진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데서 당연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유네스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제67항은 아동·학생의 이익을 위하여 교원과 학부모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가능한 모든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교원은 본연의 교직 임무에 대하여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것은 교원의 교육권의 중심에는 학생의 성장발달을 보장하는 <전문적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수업내용, 교육방법, 교재선정, 성적평가, 교육과정 편성 등의 교육전문적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 교원의 교육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학부모가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해치므로 학생에게 중립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학부모가 관여해서는 안된다.
- 따라서 학부모는 학교와 교원에게 학교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전문적 영역에서는 그 내용을 교원이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의 권리로서의 교권

통제적 권리

- 학교에서 통제적 권리가 적용되는 방식은 학생이 학교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기해지는 징계이다. 교원들이 통제적 권위를 상실했을 때에는 학생 교육이 어렵게 되므로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교원들이 교칙에서 정한 생활규칙을 학생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려는 지도력에 학생들이 순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원의 통제적 권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I. 교원과 교권



■ 전문적 권위

-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이론적 권위와 기술적 권위로 나누어 보면 먼저 이론적 권위는 학문적 지식의 소유, 탐구의 능력, 가치의 판단 등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학생들은 이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회일반에서는 표준적인 권위로 인식한다. 교원은 자신이 가진 지식에 비추어 사물의 가치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단에 기초가 되는 학문적 수준, 전문적 교육과 연구 경력의 정도에 대하여 학생과 일반인 주관적으로 또는 어떤 기준과 요건에 의해 전문적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 기술적 권위는 교원이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주어지는 권위로서 학생에 의해서는 통제적 권위와 같이 복종할 권위로 인식되고, 학부모나 일반인에 의해서는 이론적 권위와 같이 자격과 기준에 의한 표준적 권위로 인식되어 교사의 전문적 자질에 따른 능력의 권위로 인식된다.
-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적 권위는 교육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히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하며, 학생들의 능력과 습관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수단을 고안하고 활용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데 따른 기술적 권위가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한국교총, 교권침해예방현장지침서, 2002]

관련 법령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3) 교원의 예우 향상을 위한 법적 장치는 어떻게 있나?

교원 예우의 개념

- 교원에 대한 예우는 '교원의 신분에 맞게 예를 갖추어 대접함'을 의미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교원의 예우를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각종 행사에서 우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각종 분쟁이나 과다한 행정명령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통해 교원의 신분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 즉, 교원의 예우는 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분야의 지식 혹은 기술에 있어서 체계적인 훈련 혹은 연구를 쌓아 일반인들이 추종할 수 없는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그러한 교육의 권위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 대접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교원 예우와 관련한 법규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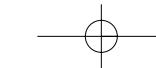
헌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하고(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제43조 제1항), 교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제48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에 대한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해야 한다(제2조).



I. 교원과 교권



● 교원 보수의 우대

국가 및 지방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제3조).

● 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 한다(제4조).

●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 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치·운영한다(제5조).

●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재심 청구

- 교원의 신분 보장 :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제6조).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설치 :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제7조).

교원예우에관한규정

● 교원 의견의 반영 및 시설 이용

국가 및 지방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제2조),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3조).

● 자료제출 요구 제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야 한다(제4조).

● 행사참여 요구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가 주관하는 행사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 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5조).

●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절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제6조).

● 교원에 대한 민원 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제7조).

● 교육활동 비용 지원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 비용이나 문화시설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유네스코(UNESCO)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

- 교원은 적절한 지위가 확보되고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교원은 전문적으로 간주되고 학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고 교원이 원활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교원단체를 인정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한다.

관련 법령

헌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선 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으나, 교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은 선생님들이 교직생활증에 닥칠지 모르는 어려운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권과 관련한 법적·제도적인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두면서 교직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4.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하여
5. 교원의 공무상 재해와 보상에 대하여
6. 교원의 휴직제도에 대하여
7. 학교안전사고와 학교 · 교원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8. 체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④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하여

신분보장의 법적 장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의 보장과 함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교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신분보장의 방법

첫째 신분의 취득, 변경, 상실과 직무수행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모두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임면권자에 의한 자의적 처분을 금하고 있다. 즉 신규채용, 승진, 정년, 직권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등 교원 신분의 취득, 변경, 소멸과 직무수행권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사립은 신규채용, 승진, 정년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다. 교원에게 법률이 정한 징계처분, 직권면직, 직위해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동의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권자와 징계사유의 인정 및 징계양정의 결정권자를 분리함으로써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즉, 법률이 정한 징계사유가 교원에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면권자의 징계요구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등을 조사·결정하도록 하고,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징계양정대로만 임면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징계시효제도의 설정으로 신분의 불안정성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교원의 경우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기타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교원의 경우에는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국·공·사립의 모든 교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징계심위원회'에 제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리한 처분의 종류 : 교원징계심 청구의 대상

징계

종류와 신분상 효력

| | 종 류 | 기 간 | 신 분 | 보수, 퇴직급여 |
|-----|-----|-------|---|--|
| 징계 | 파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급여액의 1/4감액 · 5년 이상인자, 퇴직급여액의 1/2감액 |
| | 해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 퇴직급여액 전액지급 |
| | 정직 | 1월~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제한 ·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 징계말소 제한기간 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제한 · 보수의 2/3 감액 |
| 경징계 | 감봉 | 1월~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감봉처분기간 승진제한 · 징계말소 제한기간 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제한 · 보수의 1/3 감액 |
| | 견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간 승진제한 · 징계말소 제한기간 3년 | · 6월간 승급제한 |

징계의 감경

- 훈·포장 및 국무총리 이상 표창 수상자, 교사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정상 참작 가능

징계양정 감경 기준

-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불문(경고)

직권면직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 ① 직제·정원의 개폐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 ③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으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대기명령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징계위원회의 동의 필요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③항 이하-징계위원회의 동의 필요

- ① 학급 ·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 ②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③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④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⑤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 선동한 때
- ⑥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⑦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 휴직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일정기간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천재 · 지변 또는 전시 ·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직위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직무수행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다만, 사립교원의 경우 '교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가 추가)
-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강임

■ '강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강등하는 것을 말한다.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이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강요에 의한 의원 면직 · 휴직

잘못된 호봉 획정 처분

징계 통보시의 대처방법

- 동료교사, 학부모 등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아는 사람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들을 모은다.
 - 동료교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자필 확인서를 받아둔다.
 - 동료교사, 학부모의 진정서를 받을 수 있으면 미리 받아둔다.
 - 징계사유와 관련한 자료(예를 들어 업무일지 사본, 출석부 사본 등)가 있으면 미리 준비하여 둔다.
- 징계사유가 적혀 있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교부를 요구한다.

(구두로 하여 안되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할 것)
- 징계위원회 출두 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여도 1회 교부한 것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징계 절차

- 징계 절차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해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조사

- 먼저, 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의결요구에 앞서 징계사유에 대해 미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요구 사실 및 징계사유의 통보

적법하고 공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의 심의 · 의결

- 국 · 공립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구성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과 동 법 시행령, 그리고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지난 1999. 8. 31 부터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 '사립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이사와 징계대상자가 소속한 학교의 교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이사인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교원위원은 반드시 징계대상자가 소속한 학교의 교원으로만 임명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할 수 있는 징계사유는 징계의결요구자가 징계사유로 통지한 사안에만 한정되고, 징계위원회가 임의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며, 임의로 추가된 사안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계대상자로서는 징계의결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니한 사항에 대한 조사나 심의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

정계위원회 기피 신청권 부여

- 정계대상자는 정계위원회에 당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의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기피 여부의 결정을 위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 부여

- 정계위원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 서면진술로 대신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회 이상 출석의 통지를 하여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구속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어 서면진술하게 하였으나 서면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출석 진술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진술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한 정계위원회의 정계의결은 무효이다.

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

- 처분권자는 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형량을 변경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적법한 처분권자에 의한 처분

- 국·공립교원의 경우 학교급에 따라, 직급에 따라, 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처분권자가 각각 다르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사장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므로, 정계처분권 역시 학교법인이 행사하여야 하는 바, 이사회는 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정계처분을 의결하고, 이사장은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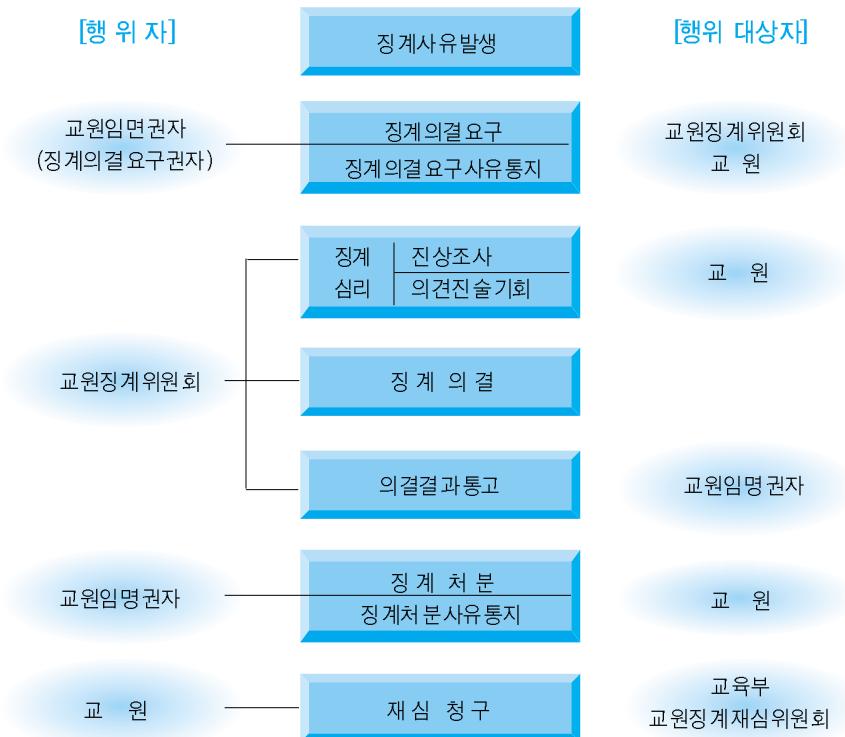
재심사 요구

- 국·공립교원에 대한 정계의 경우 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전에 적극 상급기관에 설치된 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심사요구권은 사립교원에 대한 정계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계처분 사유의 명확한 통지

- 정계의결요구권자, 정계위원회, 처분권자는 모두 각각의 권한에 따른 정계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정계사유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그 사유에 구체성이 없고 단순히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유로 정계를 한 것이 되거나, 당사자에게 충분한 항변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한 정계처분이 될 수 있다.

•• 시립학교의 정계처분 절차



[자료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문집 제12집, 2003]

정계의결기한

교원정계위원회가 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계의결

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정계처분

임명권자는 교원정계위원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정계처분을 하고, 정계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다르게 정계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징계처분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예시

- 징계의결요구를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 경우(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
- 교원징계위원회의 당해 학교 교원인 징계위원에 동일 범인 소속 타 학교 교원(이사가 아님)이 포함된 경우
-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및 징계처분사유서에 징계사유가 추상적으로 기재된 경우
-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교원임명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달리 징계처분한 경우
- 징계처분사유서에 징계처분의 주문과 이유를 달리 한 경우

■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 예시

- 직위해제처분시 관련 법 규정만 제시한 경우
- 직위해제처분을 이사회 의결없이 이사장이 단독으로 한 경우

교권 법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5) 교원의 공무상 재해와 보상에 대하여

■ 공무재해보상의 의의

- 교원의 공무재해보상제도란 교원이 교육활동중에 공무(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교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 재해보상 청구요건

- 급여사유 발생당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일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명예퇴직 하였더라도 공직 생활 당시 입은 공무 재해는 재해보상청구요건에 해당한다.
-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공무중에 무단 이탈하여 발생한 손해라든가, 사적인 행위로 입은 손해의 경우에는 공무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 생명·신체상의 인신 손해를 입었을 것을 요한다. 오로지 물질적인 손해로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에만 해당한다.
- 공무의 원인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공무상의 직업병으로 불리워지는 각종 질환 등이 공직 생활중의 손해에 따른 원인이 있으면 비록 퇴직후에 질병(손해)이 발생했을 경우 일자라도 이는 엄연히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본다.

■ 급여 결정

- 수급권자(재해공무원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해
- 소속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이송 후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급여를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 급여 절차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급여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 반드시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내용은 ① 법 제33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여부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 여부 ③ 법 제51조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폐질 또는 사망에의 해당 여부, ④ 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급여 결정 및 조정 등이다.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공무상 재해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 기타 공무·재해보상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를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무에 의하여 재해를 받은 교직원 또는 그 자의 유족 또는 피부양자 등 그 공무재해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이익이 있는 자이다.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에 청구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 재심의 청구 절차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공단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재심의 결정과 효력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 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연금취급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송달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상 송달의 효력에 준용한다.

■ 재해보상종류 및 금액

■ 공무상요양비

- 공무상요양비는 2년간의 실요양비를 지급하며, 이 경우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수사를 적용한다. 청구시효는 1년으로 한다.

➡ 공무상 요양의 범위 : 진단, 약제 · 치료제 및 보철구의 교부,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의 수용, 간호, 이송

➡ 공무상 요양 신청절차

-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입원, 통원을 구분하여 치료기간을 명시한 것)를 첨부

하여 기관장(교육감, 교육장, 교육구청장)에게 제출

-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공무원 건강진단카드 사본과 상병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긴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지체없이 승인 신청)
- 공단에서는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부

■ 공무상요양일시금

- 공무상요양일시금은 2년 요양 종료후 1년분의 추가소요 요양비예상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수사를 적용하며, 청구시효도 공무상요양비의 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한다.

■ 재해보조금

- 공무원이 수제 · 화제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 월액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보조금을 지급한다.

■ 사망조의금

-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여기서의 지급액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 교육공무원 자신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 한 때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 유족보상금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유족보상금은 급여사유 발생당시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한다. 청구시효는 급여사유발생 당시로부터 5년으로 한다.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 공무상요양비 산정시 필요한 재해 인정범위

- ①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 ② 공무수행중에 라듭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 ③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 ④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⑤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⑥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⑦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 ⑧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⑨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 계속적인 직무수행 ⑩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⑪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 공무수행중의 사고로인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 공무원이 근무시작전 · 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 · 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 · 화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 · 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 · 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 ·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판례로 본 공무상 질병의 기준

-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 92누5355, 1992. 7. 24)
-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90누8817, 1991. 2. 22).
-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대법 93누19030, 1994. 2. 25).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⑥ 교원의 휴직제도에 대하여

◆ 휴직제도의 목적

교원이 제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휴직사유 및 기간

◆ 직권 휴직

| 종 류 | 질병 휴직 | 병역 휴직 | 생사불명 | 법정의무수행 | 노조전임자 |
|----------|--|-----------------------|-----------------------------------|------------------------------|----------------------|
| 요 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의 복무를 위해 징·소집된 때 |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 기 간 | 1년이내 | 복무기간 | 3월이내 | 복무기간 | 전임기간 |
| 재직경력 인 정 | • 경력평정 : 미산입 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 승급제한: 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 •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인정 |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인정 | |
| 결원보충 | 결원보충 불가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결원보충 불가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 보수지급 | • 봉급 7할 지급 (결핵은 8할) •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 수 당 | • 공통수당 : 보수와 같은을 지급 • 기타수당 : 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 기 타 | • 의사의 진단서 첨부 | | | | |

◆ 청원 휴직

| 종 류 | 유학 휴직 | 고용 휴직 | 육아 휴직 | 연수 휴직 | 간병 휴직 | 동반 휴직 |
|----------|---|--------------------------------------|--|--|---------------------------------------|----------------------------|
| 요 건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 국제기구, 외국 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때 |
| 기 간 | 3년이내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 고용기간 | 1년이내 (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 3년 이내 | 1년 이내 (재직기간 종3년) | 3년이내 (3년 연장 가능) |
| 재직경력 인 정 | •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인정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각 5할 산입) | •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제한 (최초 1년 만인정) | • 경력평정 : 최초 1년 범위내 10할 산입 • 승급제한 | • 경력평정 : 5할 산입 • 승급제한 |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 보 수 | 봉급 5할 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 수 당 | • 공통수당 : 5할 지급 • 기타수당 : 미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 기 타 | | | 출산휴가 별도 신청 가능 | | | |

- 동반 휴직의 경우 그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통수당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
- 육아 휴직수당 : 휴직 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서 월 30만원을 지급(단, 임신사유로 휴직한 경우, 출산일부터 적용)한다.

◆ 휴직의 효력

- 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휴직 중에 정년 및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하다.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 휴직 중이라도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활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복직절차

-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지체없이 복직조치한다.
-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당연복직 조치한다.
 -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발령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복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결원보충

의의

-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한다.
- 기관별 정원관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구분

-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당해 교원의 휴직일부터 결원보충을 인정한다. 단, 병휴직은 제외한다.
- 이 경우 별도의 결원보충 승인은 필요 없다.

별도 정원의 소멸

- 휴직자의 복귀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 정원이 소멸된다. 즉,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 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별도 정원은 당해 직급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별도 정원이 소멸된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7) 학교안전사고와 학교·교원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유형별 분류

| | | |
|---------------|------------|----------------------|
| 1.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 정규교육활동 | 일반교과수업 중 |
| | | 실험·실습 중 |
| | | 체육시간 중 |
| | | 합창·체육대회, 축제 등 교내활동 중 |
| | |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교외활동 중 |
| | | 체육대회 등 교외행사 출전 중 |
| | | 클럽활동 등 학생자치활동 중 |
| | | 학교급식활동 중 |
| | | 청소활동 중 |
| | | 휴식시간 중 |
| 2. 원인행위자 | 비정규 교육활동 | 보충수업, 자율학습 중 |
| | | 방과후 교육활동 중 |
| | | 학교의 일과 전후 |
| | | 등·하교 중 |
| | 교원 | 학생의 고의: 자살, 자해 등 |
| | | 학생의 부주의 |
| | | 체벌 |
| | | 심리적 처벌 |
| | 다른학생 | 직무상 소홀 |
| | | 폭행 |
| | | 집단 따돌림 |
| | | 우발적 접촉 및 부주의 |
| | 장소 | 학생간부의 학생지도시 체벌 등 |
| | | 학교시설·설비 |
| | | 식중독 등 |
| | 피해의 내용과 정도 | 제3자 |
| | | 학교안 |
| | | 학교밖 |
| | 교원의 입장여부 | 중대사고: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
| | | 경미사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 교원의 입장여부 | 임장 중 |
| | | 비임장 중 |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사전 예방조치

-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 교육활동 중 예상되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체육, 과학실험시간, 교외 현장학습시 사전 교육 실시
-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를 한다.
 - 고층교실 유리창 청소 금지, 위험한 학교시설설비의 보완 등
- 학생에 대해 사적인 지시는 하지 않는다.
 - 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
- 학생간 왕따 또는 폭력 발생 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한다.
- 학교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사후 처리과정

- 피해 학생에 대하여 신속한 구호활동을 한다.
 - 현장 응급처치 및 양호실, 인근 병원 후송
 - 병원까지 동행하여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진단을 꼭 받도록 한다.
-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치료비를 청구한다.

학교안전사고 당사자들의 책임의 법적 근거

가해 학생인 경우 책임의 법적 근거

-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즉, 학생이 폭행이나 장난 등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가해 학생은 우선 민사상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그런데 가해 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가해 학생의 부모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가해 학생 부모의 경우 책임의 법적 근거

- 가해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제적인 손해배상 능력 즉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따라서 가해자

의 부모는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녀의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피해 학생인 경우 책임의 법적 근거

- 피해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했거나 게을리 한 것이 타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본인의 주의 의무에 대한 과실의 여부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자의 연령이나 평소의 성행 등을 고려함은 당연하다.

교원인 경우 책임의 법적 근거

- 법원은 교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교육활동과의 밀접한 관련성, 사고발생의 예측 가능성과 사고예방의 기대 가능성 등이 존재할 때에만 지도·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 따라서 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중에 발생한 사고, 지도·감독의 범위 밖에서 아주 우연히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원이 민법상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말한다.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공방까지 가는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평소 학생지도 과정에서 안전지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교사의 직무 수행중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징계권의 범위를 넘은 체벌사고의 경우 교원은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된다.
- 교원에게 불법 행위책임을 인정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은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직무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교 1·2학년생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 ▶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교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하여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관련판례 : 대법원 92다 13646 손해배상, 93. 2. 12. 선고,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범위

- 교사는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이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일반적·일상적 감독·주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만 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 이 경우에도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감독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기대 가능성성이 존재할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경우 책임의 법적 근거

●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자로서 책임의 법적 근거

- 교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당해 교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사립학교는 민법이 적용된다.
- 학교의 설치·경영자가 소속 교원의 직무상의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당해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을 할 수 있으며,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없다.

● 학교시설물 설치·관리 및 소유자로서 책임의 법적 근거

- 학교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학교설립자는 당해 학교의 설치·경영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국·공립 및 사립을 막론하고 설치·경영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의 해결방법

● 자체 해결

- 이는 사고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피해자가 그 손해를 스스로 인정하고 감당하는 경우와 기해자측이 피해자측에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서로 화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운영

- 학교 안전공제회는 1987. 12. 9. 서울에서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1988년부

터 보상급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울산(1997년)을 마지막으로 16개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설립 목적과 회원

- 전국 16개 학교안전공제회의 정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대체로 설립목적은 학교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각 학교안전공제회는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을 두고 있는 바, 일반회원은 시·도교육청 관할하의 각급 학교의 장으로 하고 있고, 특별회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학교운영위원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보상사고의 범위

- 공제회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는 각 시·도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학교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학생의 손해와 그로 인한 교직원의 법률적·경제적 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자살·자해사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가해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 건물화재로 인한 사고 등은 보상사고에서 대부분 제외하고 있다.

● 보상의 기준 및 한도

-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공제회에서는 크게 보상금인 공제급부와 분쟁상태에 있는 교사들에게 대한 지원금이 지출되고 있다.
- 공제급부의 지출내역은 요양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양급여와 폐질급여는 보호자에 의한 건강보험 수혜 후 환자가 부담하는 차액만을 보상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족급여는 장례비와 위로금, 사망원인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급여의 기준은 대부분 국가배상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에 대하여는 치료실비로 보상하고 있다. 이 때 상해의 경우는 사고 발생일이, 장해의 경우는 장해 판정일이, 사망의 경우는 사망일이 기준일이 된다. 보상한도는 각 시·도마다 다르며,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보상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지역은 일인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 역시 지역에 따라 3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고에 대한 구상

- 거의 모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II. 교육활동과 교권옹호

을 한 경우, 공제회는 그 정도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설관리책임자 또는 교육활동 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 자체 해결방법이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해 서도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방법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의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는 달리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 소송에 의해 학교안전사고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소송비용 등으로 피해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별다른 소득도 없이 서로간 간접·물질적·정신적 부담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적으로 권장할만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민법, 형법, 국가배상법

⑧ 체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체벌의 정의

- 체벌은 “학생을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고 그 고통에서 피하려는 노력에 호소하여 학업을 정진하게 한다거나 비행을 교정하려는 교육방침”을 말하며, 즉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 체벌은 또한 스스로 행하는 경우나 제3자를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불문한다. 학생지도 방법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벌의 한계와 교사의 유의 사항

- 체벌문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규정인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해석기준과 범위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적용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볼 때 법원의 판결은 교사의 체벌 행위는 당연히 징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그 행사요건과 방법 및 정도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체벌에 관하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적용으로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체벌의 징계행위는 대단히 구체적인 객관성 확보와 타당성 확보는 물론이고, 반드시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다. 즉,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체벌이 행해지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교육의 목적, 훈육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다른 징계수단에 의한 교육지도가 어려울 때(보충성의 원리), 학생의 연령, 성별, 건강, 체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체벌을 유발한 동기로 교사 자신이 한 순간에 이성을 잃고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행하는 체벌은 거의 위법행위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교사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정이 노출된 상태에서 가하는 체벌, 도구를 이용하지 아니한 체벌, 도구를 이용하여 적정한 신체부위를 벗어난 체벌 등을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기에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체벌의 목적과 불가피성을 학생에게 알리고, 체벌 후 학생을 감싸주고 학부모에게도 알리는 등의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결국 학교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체벌에 치중하는 학생지도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민법, 형법



III. 이럴땐 이렇게

9. 교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교원징계재심제도
10. 교직생활중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 도움이 되는 고충처리제도
11.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한 민원제도
12. 학교에서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제도
13. 쉽게 풀어본 형사·민사소송제도
14. 생활법률 무료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안내
15.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

III. 이럴땐 이렇게

9 교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교원징계재심제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심청구 절차

재심청구

- 재심청구인 : 각급학교 교원
 - 국·공·사립 구분없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재심청구의 대상 :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재심청구 대상이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직권 면직, 직위해제, 강임, 휴직, 전보 등
- ☞ 재심청구시 원래 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 여부와 관련없이 효력을 유지된다. 이를 ‘집행 불정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인사발령통지서(또는 기타 처분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때에는 그것을 받은 날을, 그 이외에는 처분을 구두로 통보한 때를(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려는 것을 수취거부하거나, 집에서 배달된 것을 수취거부한 경우에는 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 그것마저도 없는 때에는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견책 처분의 통지를 2003. 7. 2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 7. 3부터 계산하여 30일째인 2003. 8. 1까지는 재심청구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 청구방식 :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재심청구서)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우편을 이용할 경우 청구기간내에 도달되어야 함)
- 대리인선임 :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며, 피청구인은 관계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 가능하다.

☞ 재심청구를 하면 재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재심절차 흐름도

재심청구 접수(보정 요구)

보정 요구는 재심청구서에 흠결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하여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보정이 안될 경우 취소한 것으로 봄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서 접수 통지 및 변명 자료 제출 요구

변명서 접수 및 검토

처분권자의 변명서가 접수되면 그 부분은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 등을 방문하여 사실 조사함.

심사기일 지정·통지

당사자를 출석케 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위원들의 심문을 병행함.

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정 하되 결정의 유형에는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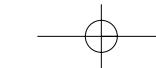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결정서는 결정 주문과 이유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함.

[자료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문집 제12집, 2003]

청구인의 권리

- 진술 : 심사회의에 출석하여 진술(또는 서면진술) 할 수 있다.
- 기피신청 : 재심위원회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증거제출 : 증인의 흔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취소 :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재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III. 이럴땐 이렇게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행정소송 제기(공립의 경우)
-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제기(사립의 경우)
- 행정소송은 재심청구 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제기권이 없어진다.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범위

- 재심위원회는 징계 기타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즉, 재심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와 이유 등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것은 심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재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함)에 대한 범위 안에서는 필요한 심사, 판단을 할 수 있다.
-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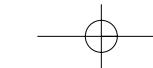
- 결정방법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 결정기한 :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
- 결정의 종류
 - 각하 :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 기각 :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취소, 변경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다.
 - 취소, 변경 명령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장래의 시점에서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권자에게 장래의 시점을 정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다.
 - 확인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이다.
 - 이행명령 :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의 이행을 명령하는 결정이다.

재심결정의 효력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록하므로 재심결정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처분권자의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원처분은 재심결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되며, 그 효력은 원처분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 재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록하므로 국·공립교원의 임면권자는 물론 사립교원의 임면권자도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심청구와 사법쟁송

- 국·공립 교원의 경우 재심청구는 필수적 전치절차이므로 징계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먼저 재심청구를 하여야 하고, 재심청구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때에 한해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립교원의 재심청구는 선택적 절차이다. 따라서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재심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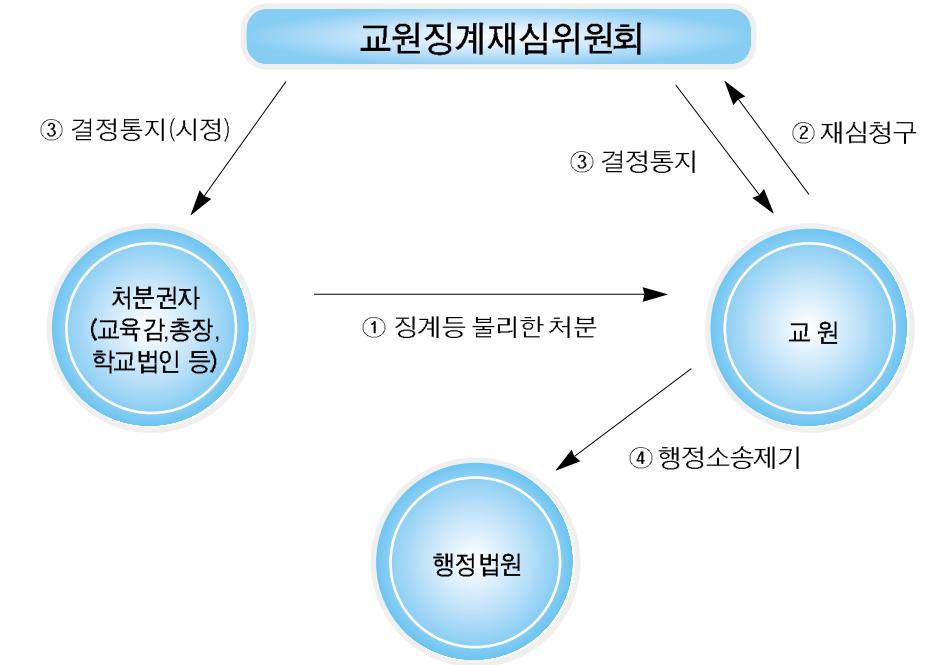
III. 이럴땐 이렇게



재심청구서 작성 요령

- 규정양식은 없으나 작성 “예”에 적시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재심청구 이유는 친분사유 항목별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간명하게 서술식으로 작성한다.

재심절차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상담실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 (우)110-230
 - ▶ 전 화 : (02)725-0496(상담실), 4188, FAX : (02)725-4189
 - ▶ 인터넷홈페이지 : www.act.go.kr

과력 부력

교원 지침을 읽고 학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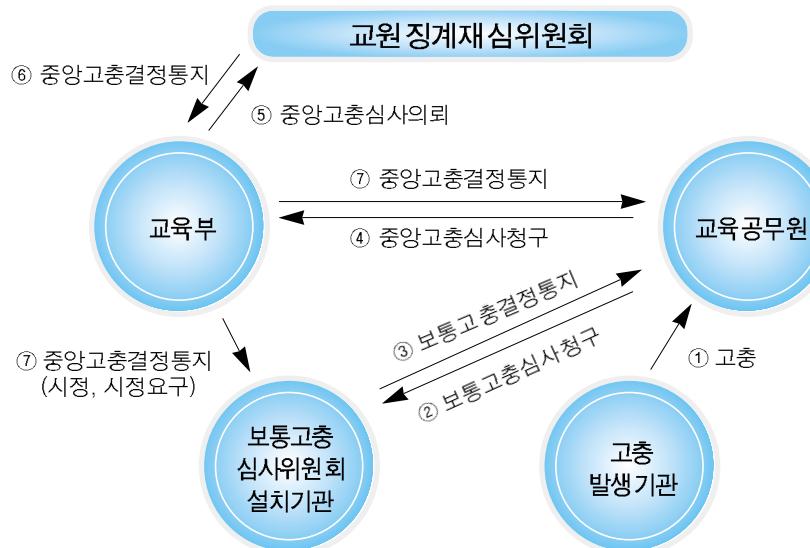
→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재심청구서 2부, 처분사유설명서 사본 2부, 별호사선임시 위임장 1부

III. 이럴땐 이렇게

10) 교직생활중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고충처리제도

고충심사 절차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설치와 관할대상

-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건은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 대학교원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근무 등) 및 교장(원장)의 고충이다.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와 관할대상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설치기관의 장이 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대상은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교육감 소속 장학관(사) · 교육연구관(사) 및 교감(원감) · 교사의 고충 사항이다.

- 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관할대상의 경합문제

-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그 이상의 기능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중 앙고충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 원 소속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인사관리

-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근무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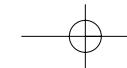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규정
- 업무량, 작업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제외되는 사항

- 시정, 구제, 생송의 절차가 각 실정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 공무원 연금급여심사에 속하는 사항
-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조치의 요구 등)
 - 당해 행정 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전체 공무원 보수인상 등)
-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III. 이럴땐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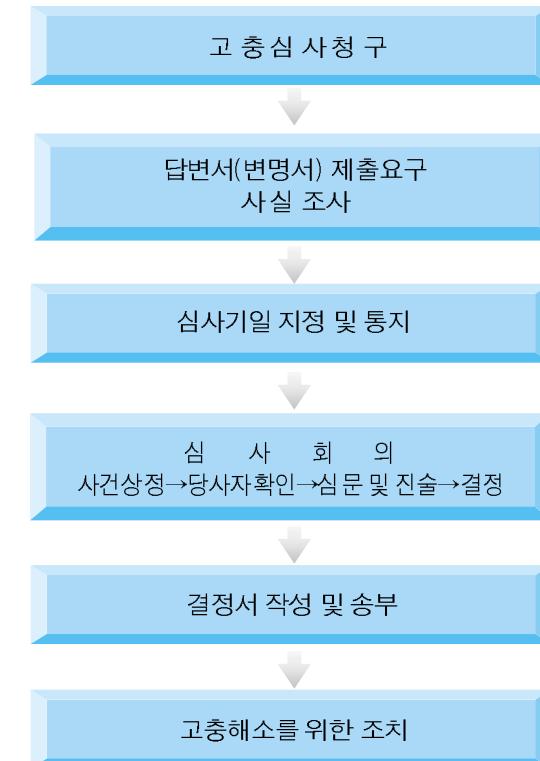
고충심사의 청구

- 교원이 고충 심사를 청구할 때는 설치 기관의 장에게 ① 주소 · 성명 및 생년월일 ② 소속기관명 및 직급 ③ 고충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인사상당 및 고충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 심사위원회의 고충 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 위의 청구서에 흔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 심사를 기피 내지는 회피 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절차 및 결정

- 고충 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치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충 심사의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시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 고충 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이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송부받은 기관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이러한 고충 심사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로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고충심사 절차 흐름도



[자료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문집 제 12집, 2003]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

III. 이럴땐 이렇게

11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한 민원제도

민원의 개념

- 민원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민원인은 행정 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원 제기방법

| 구 분 | 제출처 | 내 용 | 관련법규 |
|----------|---------------|------|--|
| 민원 서류 | 질의서, 건의서 등 | 모든기관 | 사실확인, 질의, 설명이나 해석요구, 개선건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청원서 | 모든기관 | 청원(주민등록초본 첨부) 청원법 |

민원의 대상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예를 들어 물품 계약요구 등)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예를 들어 '교사일동' 등)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방법

-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단,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과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

- 민원사항은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 우편의 경우 가급적 등기로 보내도록 한다.
 - 인터넷의 경우 대부분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민원사항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기간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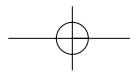
| 질 의 | 방문 질의 | 즉시 답변 |
|---------|-----------|----------|
| | 일반질의 | 7일 이내 답변 |
| 법령질의 | 14일 이내 답변 | |
| 행정개선 건의 | 14일 이내 답변 | |

민원인의 권리

- 행정기관의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는 당해 행정관청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청원하는 방법

- 행정기관에 청원하는 방법
 - 청원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실제 국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국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청원하는 방법
 - 국회나 시·도의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개의원'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청원 대표자를 정해야 한다.



III. 이럴땐 이렇게

- 청원서가 작성되면 소개의원에게 보여주고, 의원 소개서를 받아서 우송하거나, 소개의원이 접수시키도록 맡기면 된다.
- 청원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신을 통하여 청원내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면 된다.

관련 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청원법



12) 학교에서의 디툼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제도

구성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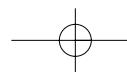
-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교원과 학부모(학생)간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조정하여 단위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다.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며, 학교장의 참여 하에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 위원 각 1인과 법률·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례에서는 7인 이내, 경상남도와 광주시의 조례에서는 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능

-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및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 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분쟁신청을 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토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으로 학부모의 지나친 항의로 인한 교원의 고충사안, 경제적 보상·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신청 결정, 협박·폭행 등 범죄 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 권고, 분쟁의 심의 결과, 분쟁의 사전 예방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사항을 학교장에게 권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운영방식 및 결과처리

- 교원·학부모(학생)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파악 및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학교장은 사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신청하고, 범죄수준의 교권·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권고 및 해당 교원의 인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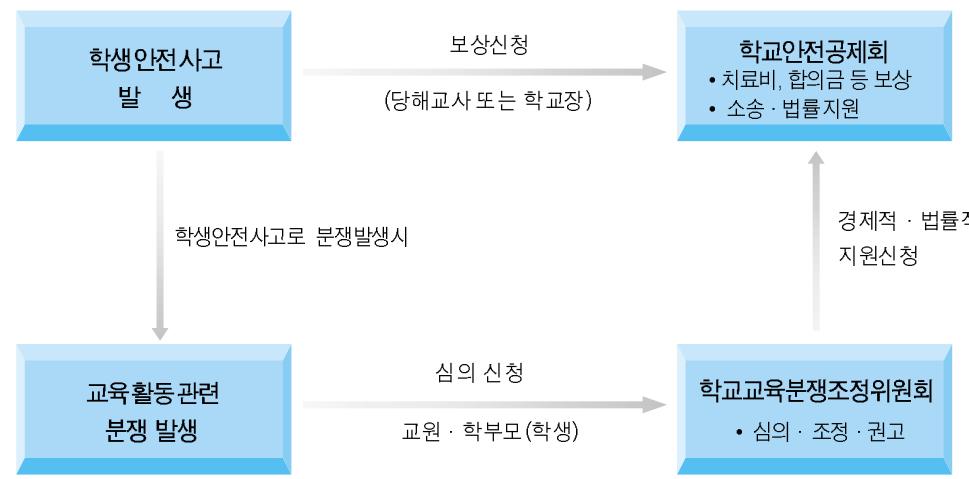


III. 이럴땐 이렇게



치·징계 등을 요청,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개선을 도모하며,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분쟁의 처리 절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안전망은 이런제 도입니다, 2002]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

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운영)

- ①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종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

13 쉽게 풀어본 민사·형사소송제도

민사소송 제도

 개념

- 재판 중에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재판절차이다. 교원이 학교안전사고 등으로 피고가 된 경우를 예정하여 소송 진행에 따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송 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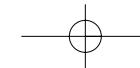
- 소장을 수령한 경우 :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 재판기일 전 또는 재판기일에 상대방과 화해 하던지 법원에 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원고의 소장 내용에 대응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를 답변서라 하며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경우

- 제소명령 신청 :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만 끌 경우에 가능하며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
 - 이의 신청 : 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 가능하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처음부터 변론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된다.
 - 가압류 해방 금액의 공탁 : 가압류를 빨리 풀기를 원한다면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받으면 된다.

 재판 및 판결

- **변론의 진행** : 변론이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원고와 피고)이 말로 써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 사실과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판사가 심리를 종결할 때까지 계속된다.
 - **증거제출** :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찾아서 스스로 신청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증빙서류 제출, 증인신청과 증인 신문, 검증/감정의 신청과 문서와 관련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 **판결의 선고 및 송달** : 보통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다시 선고한 후 10일 정도 지난 후에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도착하게 된다.



III. 이럴땐 이렇게



판결 선고 후

- 항소 및 상고절차 :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와 피고는 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중요한 것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2주 내에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고 원심 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 판결 확정 : 패소한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문이 도달한 지 2주 내에 항소장(또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 상고로 계속되는 경우 대법원(또는 제3심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형사소송제도

개념

- 개인들끼리 해결하도록 놓아두기 힘든 문제를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소

- 의의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 고발 :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고소와 취급을 같이한다.
-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형법 제156조)를 말한다.
- 친고죄 :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를 말한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등)를 말한다.

즉결심판제도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될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로 행정법규 위반사건(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훈련불참자 등),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0개 항목의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등이 있다.

약식명령

-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구(求)약식명령 또는 약식기소]가 있는 때에

정식적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종국재판

-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유죄·무죄의 재판과 관할위반·공소기각·변소의 재판이 여기에 해당되며 상고까지 할 경우 종국재판은 모두 세번이 있게 된다.

항소 및 상고

-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제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 오판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 목적은 항소와 같다.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항소, 상고 모두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도달이 아님)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1심 법원(항소) 또는 제2심 법원(상고)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배상명령제도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상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의 피해자일 때 등)이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한 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고 장해구조의 경우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급 내지 3급에 해당되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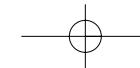
형사보상제도

-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법률(형사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으로 형사피의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자료 : 대법원 홈페이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III. 이럴땐 이렇게

14 생활법률 무료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서울지부 등 13개 지부와 42개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

공단의 업무는 법률상담에서 시작되며, 상담한 결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해·조정이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를 한다.

법률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직접(공단 각 사무실에서 직접상담, 공단 사무실 연락처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면없이 『132』), 서신, 인터넷(<http://www.klac.or.kr/consult/>) 등을 통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법률구조

민사·가사 법률구조

- 대상사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사건이다.
- 대상자 : 농·어민,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초·중등교사,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이다.
- 사건처리절차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및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당사자간 화해를 권유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한다.
- 소송비용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으나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 후 공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을 상환 받는다. 단, 폐소한 사건이나 승소기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범

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한다.

행정,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 대상사건 :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 다만, 행정소송사건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중 당사자소송사건, 민중소송사건, 기관소송사건은 제외된다.
- 대상자, 사건처리절차, 소송비용 : 민사·가사사건과 동일하다.

형사사건 법률구조

- 대상사건 : 기소전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다.
- 대상자, 사건처리절차 : 민사·가사사건과 동일하다.
- 소송비용 : 형사구조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한다.

법률정보제공

- 공단은 국민들의 문의횟수가 빈번한 주택임대차, 임금 및 퇴직금, 손해배상, 가사·호적분야 등의 상담사례를 인터넷(<http://www.klac.or.kr>)과 『ARS』자료로 입력하여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ARS』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은 국면없이 『132』번을, 기타 지역에서는 지역번호와 『132』번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III. 이럴땐 이렇게

15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

사이버 폭력의 개념

-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① 음란, 폭력 등 불건전 정보 유통과 ② 사이버 언어폭력 ③ 인터넷 도박 ④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포괄적인 악요소(聖要素)들을 통칭하는 말로 이해된다. 사이버 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에는 인격모독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이 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

- 인터넷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직적인 수사를 통해 사이버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검찰청에 컴퓨터수사부서(약 20여개)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경찰도 각 지방경찰청(14개)을 중심으로 지역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검찰의 인터넷범죄수사센터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 각 설치되어 있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컴퓨터수사과와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서 이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 인터넷 범죄 발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범죄신고를 할 수 있다.

◆ 검찰청 컴퓨터범죄 수사본부

-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내 인터넷범죄 수사센타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30-1
 - 인터넷 : <http://icic.sppo.go.kr>
 - 전 화 : 02) 3480-2480, 팩 스 : 02) 3480-2489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인터넷 : <http://www.smpa.go.kr>
 - 전 화 : 02) 739-3051~3, 팩 스 : 02) 739-3054

인터넷 범죄사례 [자료 : 대검찰청컴퓨터수사과 <http://doi.sppogo.kr>]

사례 1) 협박 전자메일 발송

- (주) △의 직원 채용에서 탈락하자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의 웹서버 관리자에게 “X X X 들안에 너희 사이트를 박살내겠어...기대하시라”란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시스템을 해킹하겠다고 협박

※ 협박(형법283조 제1항) 혐의로 검거

사례 2) 컴퓨터시스템 불법침입

- 몰래 알아낸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이용하여 웹호스팅업체 △.com이 관리하는 서버에 telnet 접속을 통하여 불법 침입한 후 회원등록정보 파일 등을 빼내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사례 3) 해킹 이용 흡병킹 사기사건

- 피시통신망과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망(kornet soback)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로채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동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 은행의 흡병킹 서비스를 이용하던 은행 고객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거래정보를 빼낸 후 이를 이용, 고객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이득을 취한 한국과학기술원 2학년생 최○○(남, 20세)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인지, 구속

사례 4) 메일서버 장애

- 스팸메일을 발송 할 목적으로 “IDv65”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 메일서버를 메일수신 및 발신서버로 지정한 후 광고용 메일 12,000통을 △△ 메일서버를 통해 약 50분간 집중적으로 발송되도록 하여 (주)△△의 웹·메일서비스에 장애 발생시킴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형법314조 제2항) 등의 혐의로 구속

사례 5) 음란시디 판매

- 외국의 무료 웹사이트에 음란성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음란동영상 등을 판매하거나, 스팸메일을 통해 하이텔, 천리안 등 국내 상용통신망 기업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내 유인한 후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받고 CD 복제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제작한 다량의 음란시디 등을 판매

※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사례 6) 음란 홈페이지 운영

- 미국 웹호스팅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버에 “△△은행”이라는 음란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www.play△.com”등 유료음란사이트를 링크시켜 놓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 을 게재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음란한 영상·부호 등을 배포·전시

※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사례 7) 인터넷 경매를 통한 음란물 유통

- 인터넷 경매 (주)△ 사이트를 통해 ‘한국몰카모음’ ‘일본초체험자옥’ 등 불법복제한 음란시디를 판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한국교총의 교권옹호제도 안내

교총의 교권옹호제도 안내

한국교총은 선생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교직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학교안전사고, 신분피해, 학부모와의 분쟁 등 고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한국교총 교권/교직상담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총의 교권옹호 활동

-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면직, 명예훼손, 폭행 등 교원 신분피해와 학교안전사고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조정, 중재, 해결활동 전개
- 교직상담실 운영(연간 5천여건 상담), 교원 고충사항의 조사·처리, 법률고문 및 교권변호인단 운영, 교원예우향상 사업의 개발·추진, 교육의 사회화 운동, 교권확립 및 예방 교권활동

교권/교직상담 안내

상담내용 : 교직생활 전반

| 교권침해영역 | 교직상담영역 |
|--------------|------------------------|
| • 신분피해 | • 인사(임면, 승진, 전보, 징계 등) |
| • 학교안전사고피해 | • 보수(호봉, 수당, 학·경력인정 등) |
| • 폭행피해 | • 자격(취득, 변경, 연수 등) |
| • 명예훼손피해 | • 복무(휴가, 연가, 휴직, 복직 등) |
| • 교원징계재심사건 | • 연금(공상, 퇴직금 등) |
| • 교직생활중 고충사항 | • 기타 교육관련 사항 |

교권옹호기금에 의한 재심청구 및 소송비 보조금 최고 75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본회 회원으로서 징계나 불리한 처분, 학교안전사고,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사건의 소송 당사자
- 본회 회원으로서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등)에 대한 재심청구 당사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소송비 보조금은 각 심급별 250만원 이내 지급, 3심까지 최고 750만원까지 무료 지급
- 교원징계 재심청구 변호사 선임료는 100만원 이내 무료 지급

▶ 청구절차

-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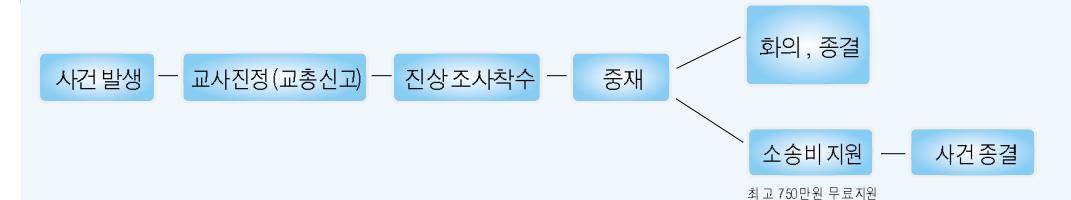
▶ 심사 및 결정

- 한국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및 지급액 심사 결정

교권침해 및 교직상담 방법

- 인터넷상담 : 주소창에 'www.kfta.or.kr' 또는 한글로 '교총'을 입력하신 후 교권/교직상담실 클릭
- 전화상담 : (02)577-7165(직통), 080-022-5633(수신자 요금부담)
- 팩스상담 : (02)3461-0431
- 방문·서신상담 : (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총 회원 안심시스템



교총의 교권옹호제도 안내

한국교총 교권 변호인단 위원(변호사) 명단(총53명)

| 시도교총 | 관할법원/지원 | 성 명 | 전화번호 |
|------------|---------|-------|------------|
| 서 울 | 서울지방법원 | 이 석 연 | 593-8100 |
| | | 조 상희 | 587-9700 |
| | | 윤 성 철 | 592-2224 |
| | | 이 재 원 | 756-1221 |
| | | 이승환 | 555-3601 |
| | | 이 재 육 | 3474-6400 |
| | | 김 병 직 | 521-4782 |
| | | 이 영 수 | 522-3200 |
| 부 산 | 부산지방법원 | 박 신 일 | 946-1001 |
| 대 구 경 북 | 대구지방법원 | 지 흥 원 | 746-8900 |
| | | 김 익 환 | 744-0020 |
| | | 김 재 권 | 759-6611 |
| | /안동지원 | 권 영 법 | 856-4086 |
| | | 권 기 준 | 856-7373 |
| | /김천지원 | 임 영 수 | 437-1515 |
| | | 정 경 수 | 432-5756 |
| | /경주지원 | 최 정 식 | 775-9444 |
| 인 천 | 인천지방법원 | 전 택 윤 | 861-0020 |
| | | 진 영 광 | 529-2131 |
| 광 주 전 남 | 광주지방법원 | 이 근 우 | 228-0543 |
| | | 양 차 권 | 226-7400~1 |
| | | 강 신 영 | 222-3331 |
| | | /순천지원 | 서 종 식 |
| | /해남지원 | 정 인 성 | 794-6556 |

| 시도교총 | 관할법원/지원 | 성 명 | 전화번호 |
|------------|----------------|-------|--------------|
| 대 전 충 남 | 대전지방법원 | 이 관 형 | 472-4900 |
| | | 한 원 규 | 472-5800 |
| | | 백 흥 기 | 472-8808 |
| | | 김 동 환 | 472-4720 |
| | /홍성지원 | 김 학 식 | 632-1700 |
| 울 산 | 울산지방법원 | 최 인 호 | 257-2800 |
| | | 최 영 철 | 257-2800 |
| | | 정 선 명 | 223-1616 |
| 경 기 | 수원지방법원 | 노 생 만 | 211-4711 |
| | | 배 상 운 | 217-6600 |
| | /여주지원 | 김 학 모 | 885-0007 |
|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 박 세 환 | 878-7760 |
| | | 정 종 희 | 879-3640~1 |
| | 인천지법 /부천지원 | 서 성 원 | 032-325-1900 |
| | 춘천지방법원 | 이 택 수 | 254-4368 |
| 강 원 | | 안 봉 진 | 242-4316 |
| 충 북 | 청주지방법원 | 박 총 규 | 285-2081 |
| | | 김 준 환 | 224-3133 |
| | /제천지원 | 김 창 섭 | 652-3500 |
| 전 북 | 전주지방법원 | 심 병 연 | 278-7302 |
| | | 이 희 권 | 277-7007 |
| | /정읍지원 | 박 혁 | 536-2080 |
| 경 남 | 창원지방법원 | 장 권 현 | 266-0066 |
| | /진주지원 | 김 기 한 | 753-2622 |
| | | 김 재 경 | 759-6688 |
| | | 박 종 연 | 754-3737 |
| | /통영지원 | 송 성 욱 | 644-9911 |
| 제 주 | 제주지방법원 | /밀양지원 | 안 병 구 |
| | | 권 범 | 353-6900 |

만든이

조홍순(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
신정기(한국교총 교권옹호국장)
이성재(한국교총 교권옹호국부장)
김영준(한국교총 교권옹호국)

알아두면 힘이 되는 교권상식 <비매품>

2003년 12월 일 인쇄
2003년 12월 일 발행
편집 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발행인 이 군 현
인쇄인 (주) 에이엠젯코리아 (www.amzkorea.com)

등록 : 1951년 12월 1일(번호 제1-74호)